

대학원 건축학과 운영 내규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표) 일반대학원 건축학과는 건축과 도시의 계획, 설계 관리에 이르는 각 과정에 필요로 하는 고급 전문이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 이를 위해서 건축의 예술·디자인적 요소와 공학·기술적 요소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설계기법과 기술 등 건축 설계 및 도시설계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축가 및 도시설계 전문가를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둔다.

제2조 (적용범위와 효력)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,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.

제3조 (의사결정 방식)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2/3이상의 참석(위임 포함)과 참석 교수의 2/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장 입학관리

제4조 (우수학생의 유치) 건축학과 소속 모든 교수들은 건축학과 석·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.

제3장 교육과정 및 지도교수의 선정

제5조 (교육과정 및 과목개설) 건축학과 소속 교수들은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.

제6조 (전공영역) 건축학과 내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세부전공을 둔다.

- ① 건축계획 및 설계(Architectural Planning and Design)
 - 건축설계를 중심으로 건축 계획, 건축 역사, 건축이론 분야의 고급 전문이력을 양성한다. 강의구성은 건축사, 환경행태, 건축의장, 건축프로그래밍 등의 이론

과 건축설계실습으로 구성된다.

②도시설계(Urban Design)

- 도시설계란 건축과 도시를 하나의 공간영역으로 다루고 이를 디자인하는 전문가를 양성한다. 도시설계의 교육내용은 건축과 도시설계의 영역을 폭넓게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,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다루며, 도시재생, 역사권 개발, 주거단지 및 신도시개발, 도시건축공간분석 등을 구성되며, 실습을 위주로 한 도시설계실습으로 구성한다.

③실내건축디자인(Architectural Interior Design)

- 실내건축디자인은 기본적으로 건축설계영역을 기본으로 건축의 내부공간 디자인에 보다 관심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는 영역이다. 공간, 가구, 각종기기설비, 심리, 색채, 재료, 전시 및 디스플레이 기법 등에 관한 강의가 제공되며, 설계형 실습이 제공된다.

④건축인문학(Architectural Humanities)

- 건축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행해진다. 우리는 역사, 철학, 사회문화적 유산 그리고 정치, 경제적 행위로 인간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영역으로부터 건축은 자유로울 수 없었다. 본 전공은 앞서 언급한 영역을 폭넓게 논의하며 이 논의를 통해 건축이론, 건축설계 그리고 건축실무의 담론을 비판적으로 탐구한다.

제7조 (지도교수 선정)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생은 한 학기를 마친 이후에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.

제4장 자격시험

제8조 (종합학력시험 기준)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, 통합과정은 대학원의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 응시할 수 있다.

제9조 (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시험방법)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, 박사 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하되,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 할 수 없다.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 및 구두시험으로 시행하며,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교원 2인이 참여하여 출제하여 공동 평가한다. 합격점수는 80점

이상으로 한다.

제10조 (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) 석사과정은 1회 이상 국내학술대회에서 주저자 및 교신저자로 학술논문을 발표하거나 2인 이내의 설계작품발표발표,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종합학력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. 박사과정은 2회 이상 국내학술대회에서 주저자 및 교신저자로 학술논문을 발표하거나 2인 이내의 설계작품발표,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다

제11조 (외국어시험 자격시험 시행 및 면제) 외국어 자격시험 시행 및 면제는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. 단, 내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영어 성적 및 영어권 국가 이외에 추가로 독어, 불어, 중어, 일어, 한문, 노어, 서반아어 중 선택하여 면제신청을 할수 있다.

제5장 학위과정

제12조 (석사학위 과정 선택) 3학기 이내 학위논문제출 및 학위작품, 연구논문 중에서 학위 취득 방법을 선택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- ① 학위작품 보고서란 전공과 관련된 개인의 창작물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글로, 작품에 대한 제작 의도, 과정, 결과, 전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학위논문 대체 방안을 의미한다.
- ② 연구논문이란 전공 분야의 특정 주제에 대한 논문으로 작성양식은 학위논문과 같으나, 결과물을 학위논문 온라인에 등재하지 않고 중앙도서관(국회 및 국립도서관)에 제출하지 않은 학위논문 대체 방안을 의미한다.

제13조 (석사학위 과정의 변경)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. 단,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함

제6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

제14조 (석사학위 과정의 심사) 1회의 공개심사와 1회의 본 심사를 거쳐야 한다. 공개심

사 결과보고서 제출 약 2-3개월 전(봄 학기 졸업의 경우 4월초, 가을 학기 졸업의 경우 10월초)에 시행하며, 본 심사는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행한다.

제15조 (박사학위 과정의 심사) 1회의 예비심사와 1회의 공개심사, 1회 이상의 본 심사를 거쳐야 한다. 예비심사는 논문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 8-9개월 전(봄 학기졸업의 경우 9월 중, 가을학기 졸업의 경우에는 3월 중)에 시행하며, 공개심사는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2-3개월 전(봄 학기 졸업의 경우 4월초, 가을 학기 졸업의 경우 10월초)에 시행하며, 본 심사는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시행한다.

제16조 (논문대체 심사절차) 석사학위 과정생이 학위취득 방법을 학위작품이나 연구논문으로 선택한 경우 본 내규에 따라 심사한다.

- ① 학위작품 심사는 1회의 공개심사와 1회의 본 심사를 거쳐야 하며, 공개심사는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약 2-3개월 전(봄 학기 졸업의 경우 4월초, 가을 학기 졸업의 경우 10월초)에 시행하며, 본 심사는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전까지 시행한다. 심사위원은 3인(지도교수 및 교내전공교수)으로 정하며, 합격여부는 심사위원장 우선으로 한다.
- ② 연구논문 심사는 1회의 공개심사와 1회의 본 심사를 거쳐야 하며, 공개심사는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약 2-3개월 전(봄 학기 졸업의 경우 4월초, 가을 학기 졸업의 경우 10월초)에 시행하며, 본 심사는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전까지 시행한다. 심사위원은 2인(지도교수 및 교내전공교수)으로 정하며, 합격여부는 심사위원장 우선으로 한다.

제17조 (논문대체 제출) 심사결과 최종 합격 판정을 받은 학생은 다음 사항을 학과로 제출하며, 학과에서는 3년동안 보관 이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.

- ① 표절 검사결과 확인서
- ② 학위작품 보고서 및 연구논문 보고서 제본분
- ③ 학위작품 보고서 및 연구논문 보고서 국문 또는 영문 파일

제18조 위의 규정 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규정에 따르며, 학과에 위임된 사항에 관해서는 대학원 학과 교수 회의를 통해 정한다.